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5. 10 선고 2022가단249403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호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4. 12.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2. 4.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21. 접수 제2025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합836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 16. C은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2. 6. 확정되었다.

나. D(이하 ‘망인’)은 2022.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와 C, E이 있으며, C의 상속지분은 1/3이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2. 4. 3.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21. 접수 제2025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지분대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의하여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망인과 상당한 기간을 동거하면서 망인에 대한 병간호를 하는 등 망인의 재산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한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기여분 등이 반영되어 법정상속분이 수정된 것)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며,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수익자나 전득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나

부동산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파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층 291.66㎡

1층 233.07㎡

2층 229.02㎡

3층 229.02㎡

4층 229.02㎡

5층 225.17㎡

옥탑1층 23.85㎡

옥탑2층 7.0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제4층 호 61.89㎡

대지권의 복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 458.9㎡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458.9분의 27.512

